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38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김종민·강준현·손 솔
장철민·박희승·허 영
이학영·김기표·홍기원
전종덕(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4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 정수 변경 및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 (생 략)</p> <p>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u>100분의 10</u>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p> <p>④ ~ ⑦ (생 략)</p>	<p>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100분</u> <u>의 14로</u>-----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